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085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08526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3. 23 선고 2019가단240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변론종결 2022. 1. 19.

판결선고 2022. 2. 1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3. 23. 선고 2019가단240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들과 G 사이에 체결된 2015. 5. 10.자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위 주식 3,000주, 피고 E은 위 주식 2,250주, 피고 F은 위 주식 100주에 관하여 G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 E과 G 사이에 체결된 2015. 5. 10.자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위 주식 3,000주, 피고 E은 위 주식 2,250주에 관하여 G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행의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주식을 양수한 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양수한 주식을 다시 양도할 수 있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수 있으므로, 어떤 당사자들이 명의개서 전·후에 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 양도 · 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G과 M이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실제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2004년 이후 G이 위 주식을 다시 양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2015년경 위 주식의 소유자는 G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김지영, 판사 권준범

별지